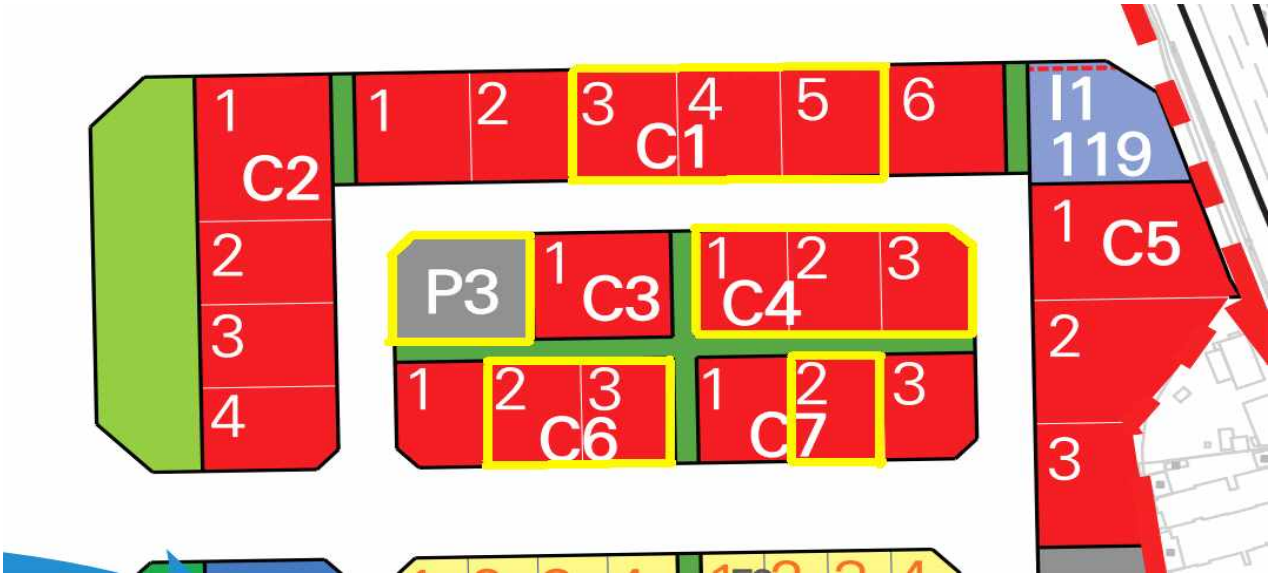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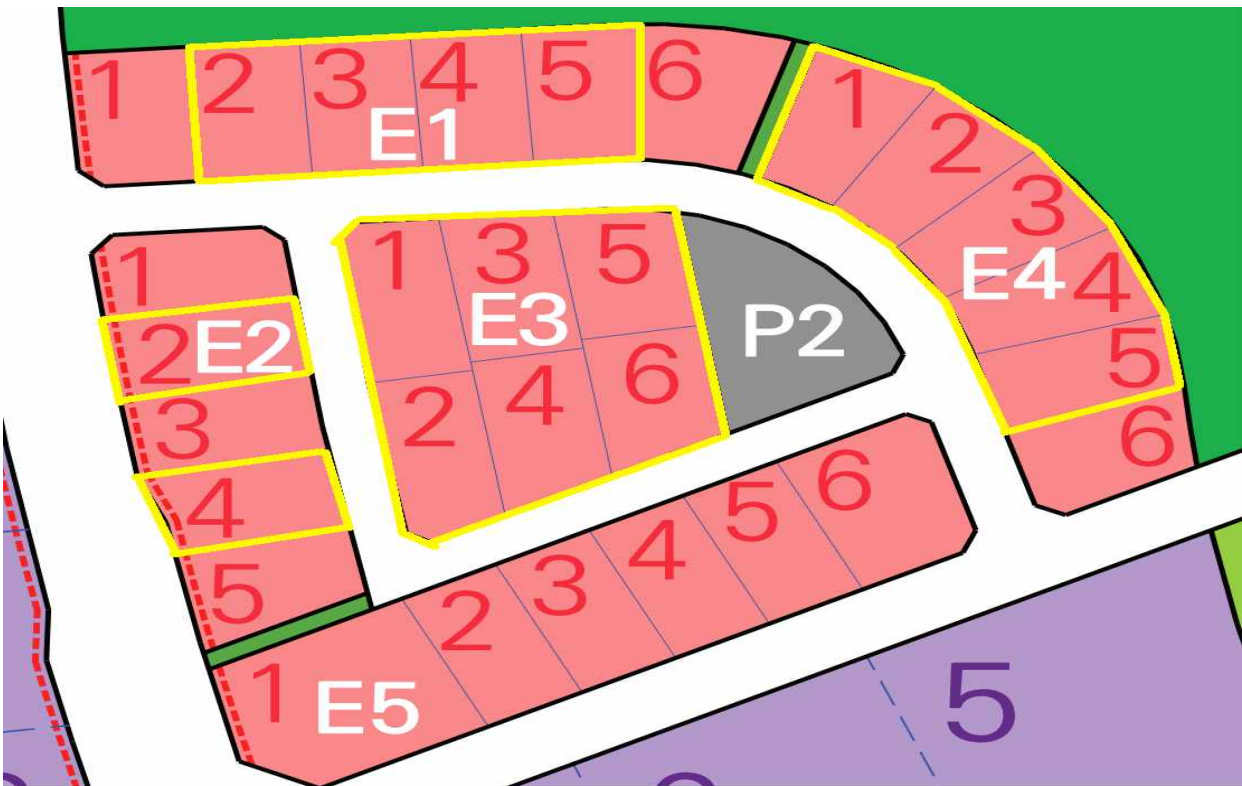


□ 상업시설용지, 주차장용지 미분양 위치도



□ 지원시설용지 미분양 위치도



# 상업시설용지 허용용도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C	C1~C7	용 도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허용용도</div> <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</li> <li>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,</li> <li>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·라목</li> <li>-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·다목,</li> <li>-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)</li> <li>- 제10호 교육연구시설</li> <li>- 제11호 노유자시설</li> <li>- 제12호 수련시설 중 가목</li> <li>- 제13호 운동시설</li> <li>- 제14호 업무시설</li> <li>- 제15호 숙박시설</li> <li>- 제16호 위락시설</li> <li>-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·세차장,</li> <li>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·전신전화국·통신용시설</li> </ul> </li> </ol> </div> </div>
		불허용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li>2.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8호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</li> </ol>
		건폐율	1. 60%이하
		용적률	1. 420%이하
		최고층수	1. 7층
		배 치	1. 진입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구간 건축물을 2m 이상 후퇴시키는 건축한계선 지정 (지침도 참고)
		형 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로변 저층부는 투시율이 높은 마감재를 적용하여 개방감 확보</li> <li>2. 지붕은 입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며 간결하고 일체감 있는 형태 적용</li> </ol>
		색 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 유지</li> <li>2. 돌출색이 큰 면적에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며, 외벽의 색채 변화로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 해소</li> </ol>
		기타사항	1. 상업시설의 1층 층고와 옥외광고물 설치 높이를 조화롭게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

# 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E	E1~E5	용도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허용용도</div> <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3,4호의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)</li> <li>-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, 공연장</li> <li>- 제9호의 의료시설(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</li> <li>- 제13호의 운동시설(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li>- 제14호의 업무시설</li> <li>-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</li> <li>-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</li> </ul> </li> </ol> </div> </div>
		용도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불허용도</div> <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허용용도이외의 용도</li> <li>2.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3호에 의한 건축물</li> </ol> </div> </div>
		건폐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60%이하</li> </ol>
		용적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400%이하</li> </ol>
		최고층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7층</li> </ol>
		배 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진입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구간 건축물을 2m 이상 후퇴시키는 건축한계선 지정 (지침도 참고)</li> </ol>
		형 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로변 저층부는 투시율이 높은 마감재를 적용하여 개방감 확보</li> <li>2. 지붕은 입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며 간결하고 일체감 있는 형태 적용</li> </ol>
		색 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 유지</li> <li>2. 돌출색이 큰 면적에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며, 외벽의 색채 변화로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 해소</li> </ol>

# 주차장용지 허용용도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P	P1~P3	용 도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 (“부속용도”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)</li> <li>•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</li> <li>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제외)</li> <li>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</li> <li>제7호 판매시설</li> <li>제13호 운동시설(육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</li> </ul> </li> </ul> <p>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% 이상이어야 한다.</p>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90%이하	
		용적률	• 630%이하	
		최고층수	• 7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기 타		